#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 한정애·문정복·김한정

김승남 · 김경만 · 유정주

김승원 · 김정호 · 윤영찬

조정식 · 서영교 · 김병기

박완주 • 한준호 • 이병훈

김회재 · 이상직 · 송재호

이형석 · 김윤덕 · 이상민

박 정・양경숙・홍정민

소병훈 · 고민정 · 박찬대

정성호 · 장철민 · 이해식

윤재갑 · 오기형 · 홍성국

안규백 · 송옥주 · 강준현

송갑석 · 아민석 · 황 희

천준호 • 진성준 • 박상혁

신정훈 · 최기상 · 오영환

유관석 · 최혜영 · 이용우

안호영 · 김진표 · 임오경

윤호중 • 이정문 • 강선우

김수흥 · 김남국 · 박영순

이인영 · 오영훈 · 기동민

김교흥 • 한병도 • 백혜련

이워욱ㆍ허 영ㆍ노웅래

조응천 • 윤미향 • 김영배 김민석 • 윤후덕 • 진선미 김영호 · 이용빈 · 이낙연 유동수 • 윤영덕 • 홍기원 신현영 · 임종성 · 강득구 정청래 · 정필모 · 이광재 정태호・홍영표・장경태 서동용 • 박용진 • 고용진 위성곤 • 권인숙 • 양기대 민홍철 • 서삼석 • 권칠승 김영주 · 최인호 · 홍익표 박홍근 · 임호선 · 고영인 이수진 • 윤건영 • 김두관 최종윤 • 이장섭 • 이원택 김병욱 • 전용기 • 강훈식 유기홍 · 이용선 · 김철민 소병철 • 이규민 • 신동근 강병원 • 이개호 • 송영길 전재수 · 박범계 · 허종식 정춘숙 · 도종환 · 김용민 우상호 · 박재호 · 인재근 김경협 · 맹성규 · 이학영 이동주・박성준・김병주 이상헌 • 우원식 • 박광온 의원(138인)

#### 제안이유

현재 동남권의 항공물류 99%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, 연간 순수물류비용으로만 7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음.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·여객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.

또한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·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이 같은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·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,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, 확장성,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음.

이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, 절차, 지원 사업, 소요 재원의 조달,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·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 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·여객중심의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을 기본방향으로 조성함(안 제3조).
- 다.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,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라.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·도로 등 교통시설,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·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, 자금지원, 민간 자본유치사업의 지원,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).

- 바.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의 우대,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24조부터제27조까지).
- 사.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및 종합 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(안 제28조 및 제29 조).
- 아.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하고,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(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).

##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,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·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동남권 신공항"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(이하 "신공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2. "관문공항"이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송분담률 이상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처리하는 공항을 말한다.
- 3. "신공항 건설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 - 가.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
  - 나.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·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,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·항공화물유통시설·정보통신시설 등 공

- 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
- 다.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 시설등의 조성
- 라.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
- 제3조(기본방향)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.
  - 1.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·여객 중심의 관문공항
  - 2. 동남권 및 남해안권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 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
  - 3.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
  - 4. 2030 부산세계박람회(2030 World Expo Busan Korea)의 성공개 최를 위한 조기 건설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
-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

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신공항 건설 등

- 제7조(사전절차 단축이행 등) ①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사업목표, 사업규모, 수요추정, 추진체계, 소요예산,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수 있다.
- 제8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고시하여야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

- 2.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
- 3. 공항·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
- 4.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
- 5. 건설 및 운영계획
- 6. 재원조달계획
- 7. 확경관리계획
- 8.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- ③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항시설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9조(사업시행자)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 부장관으로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 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)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고,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- 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
- 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 및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
- 3.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·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
- 4.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
- 5. 연도별 투자계획·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6.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등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승인·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 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

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1조(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심의 또는 해제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
  - 2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,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, 같은 법 제2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
  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  - 4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
-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점용·사용 허가의 고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
- 7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 정·변경·해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
- 8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· 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0. 「도로법」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번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

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
- 1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
- 1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
- 13.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
- 14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5. 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
- 1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·신고
- 1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
- 1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
- 19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 및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, 같은 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

- 20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
- 21.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2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
- 23. 「자연공원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(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24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
- 25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(草地轉用)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
- 26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
- 27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의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 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
- 28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
- 29. 「항로표지법」 제9조제6항,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 지의 설치·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
- 30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31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부대공사의 시행)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부대공사"라한다)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·흙·돌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, 제131조, 제144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"사업시행자"로 본다.

#### 제3장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

- 제14조(재정지원)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·도로 등 교통시설,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.
- 제15조(민간자본 유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

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
- 제16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 법」,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 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있다.
- 제17조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8조(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

건설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
- 2.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
- 3.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9조(토지·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교육기관,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·제4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·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

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 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야 한다.

- 제20조(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건축법」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1조(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산림청장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.
- 제22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후 지역·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23조(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24조(지역기업의 우대)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- 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 주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,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 부료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 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제26조(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입주외국 인투자기업(산업·연구, 관광·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공항 건설 지역의 관할 시·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
- 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- 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
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제27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있다.
- 제28조(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29조(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)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「관세법」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

제30조(공항공사의 설립)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- 제31조(자본 및 출자)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.
- 제32조(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) 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## 제5장 보칙

- 제33조(권한의 위임)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공항 건설 지역의 시·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,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- 제34조(승인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·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· 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
- 2.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3.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35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